새로운 도약, 구민과 함께하는 서구의회

2026. 9. 22.

심 사 결 과 보 고

의안 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비고
4606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의안 번호	4606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경 제 복 지 위 원 회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22.

경제복지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년 8월 27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6년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심사 일자: 제29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 상정 및 심사.의결 (2026.9.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관내 가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가족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 만료('26. 12. 31.)가 도래함에 따라,
-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수행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여 가족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등),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가족센터)
-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위탁운영 등)
-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

제6조(의회동의), 제7조(위탁 동의안)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류옥화)

○ 본 동의안은 민간에 위탁운영 중인 대전서구 가족센터가 2026. 12. 31.자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심사지표에 의거 신청법인·단체의 공신력, 재정능력, 수업수행 능력(유사 사업 실적), 향후 센터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위탁운영 등),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회동의), 제7조(위탁 동의안)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 략

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6. 소 수 의 견: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4606

제출년월일: 2026. 8. 27.
제 출 자: 서 구 청 장

1. 제안이유

가. 관내 가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가족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 만료('26. 12. 31.)가 도래함에 따라,

나.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수행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여 가족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나. 위탁의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등),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가족센터)
-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위탁운영 등)
-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 제6조(의회동의), 제7조(위탁 동의안)

○ **추진 필요성**: 가족 구조 다변화에 따른 맞춤형 통합 가족서비스 제공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민간의 전문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한 효율적 시설 관리 및 사업 추진이 필요함.

다. 위탁사무의 내용

○ 가족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

○ 가족상담, 교육,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가족센터 사업 수행

○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마련 및 관리 등 제반 사항

○ 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 이용자 안전관리 등 시설물 관리

○ 기타 가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한 의무

라.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 시설현황

<table>
<tr><td>위탁기관</td><td colspan="7">·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이경찬, 센터장 김정현)</td></tr>
<tr><td>위탁기간</td><td colspan="7">· 2022. 1. 1. ~ 2026. 12. 31.(5년)</td></tr>
<tr><td>소 재 지</td><td colspan="7">· 대전 서구 정림동로7번길 28-12, 4층 (정림동, 수밋들어울림플랫폼)</td></tr>
<tr><td>운영시간</td><td colspan="7">· 월~금 9~18시, 토 9~16시 / 화요일은 21시까지 연장운영</td></tr>
<tr><td rowspan="2">시설면적</td><td rowspan="2">전체면적</td><td colspan="5">4층</td><td>1층</td></tr>
<tr><td>사무실</td><td>상담실</td><td>교육실</td><td>교류소통공간</td><td>언어교실</td><td>공동육아나눔터</td></tr>
<tr><td>730.95㎡</td><td>110.05㎡</td><td>89.6㎡</td><td>131.26㎡</td><td>246.36㎡</td><td>44.2㎡</td><td>109.48㎡</td></tr>
<tr><td>인력현황</td><td colspan="7">· 36명 / 비상근직 8명(센 터 장 1, 방문교육 7),
상 근 직 28명(가족친화 7, 가족지원 7, 특성화 7, 아이돌봄 7)</td></tr>
<tr><td>주요사업</td><td colspan="7">· 가족통합서비스,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공동육아나눔터, 다문화가족교류소통 공간,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td></tr>
<tr><td>위치도</td><td colspan="7">
</td></tr>
</table>

마. 위탁기간 : 2027. 1. 1. ~ 2031. 12. 31. (*5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바.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 수탁자격: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 등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 선정방법: 공개모집(15일 이상 공고)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적격성 및 사업수행능력 서면·면접 심사를 거쳐 최고득점 기관 선정

사. 소요예산: 1,600,510천원(2026년 기준)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 산		비 고
총 계		1,600,510		
가족센터 운영	가족센터 운영	356,200	1,003,580	국비50% 시비30% 구비20%
	온가족보듬사업	197,490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	47,160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307,730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95,000		
가족센터 운영 보조	가족센터 운영 경비	22,800	22,800	구비 100%
가족센터 종사자 지원	가족센터 종사자 지원	103,400	103,400	시비50% 구비50%
다문화가족특화사업	방문교육,	171,150	390,940	국비50% 시비50%
	통번역서비스	76,080		
	언어발달 지원	87,880		
	이중언어 부모코칭	40,130		
	이중언어 직접학습	15,700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20,000	20,000	국비50% 시비25% 구비25%
공동육아나눔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59,790	59,790	국비50% 시비30% 구비20%

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 별첨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 참고

3. 참고사항

가. 공개모집(재위탁) 추진계획 1부(별첨)

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 1부(별첨)

참고사항-가

2026. 8.

- 가족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

대전서구가족센터 민간위탁(공개모집) 추진계획

주 민 복 지 국

여성가족복지과 /가족다문화팀

- 가족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

대전서구가족센터 민간위탁(공개모집) 추진계획

○ 「대전서구가족센터」 민간위탁 기간 만료(2026.12.31.)가 도래함에 따라 성과평가 및 적정성 검토 결과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수탁기관 선정(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위탁운영 등)

○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2 추진방향

○ **공정·투명한 공개모집 절차 이행 및 행정 효율성 제고**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와 공정한 선정심사를 거쳐 행정의 연속성과 효율성 제고

○ **객관적·종합적 심의를 통한 최적의 수탁기관 선정**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신청 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운영성과 및 재정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수탁기관 최종 선정

3 민간위탁 필요성

○ **사업의 전문성 및 연속성 필요**

- 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등에 따른 가족상담·사례관리·다문화 지원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로,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인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서비스 질과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행정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

- 민간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양한 복지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구의 지도·감독, 보조금 관리, 성과평가 등을 통해 투명성과 공공성을 지속 확보할 수 있음.

4 시설현황

○ **(시 설 명)**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 **(위 치)**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로7번길 28-12, 4층(수밋들어울림플랫폼)

○ **(수탁기관)**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이경찬)

○ **(위탁기간)** 2022. 1. 1. ~ 2026. 12. 31.(5년)

○ **(시설규모)** 연면적 730.95㎡/상담실, 교육실, 공동육아나눔터, 언어교실 등

○ **(운영예산)** 1,600,510천원(국비 46.1%, 시비 35.7%, 구비 18.2%)

○ **(운영인원)** 36명(센터장1, 부센터장1, 사무국장1, 직원33)

5 위탁개요

○ **(위탁대상)**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 **(위탁기간)** 2027. 1. 1. ~ 2031. 12. 31./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5년

○ **(위탁범위)**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 전반

○ **(신청자격)** 관련 법령에 따른 가족·복지 관련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 **(위탁방법)**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공개모집 공고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서면 및 질의응답)를 통한 최종 선정

○ **(추진일정)**

민간위탁 공고 및 접수	→	의회 동의	→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심의	→	위·수탁 협약 체결
'26 .9월 중		'26. 9월 (제299회 제1차 정례회)		'26. 10월 중		'26. 10월 중

6 추진계획

1 민간위탁 공개모집

○ **(공고기간)** 2026. 9. 1.(월) ~ 2026. 9. 18.(금) / 17일간

○ **(접수기간)** 2026. 9. 16.(수) ~ 2026. 9. 18.(금) / 3일간

- 단독신청의 경우 7일간 재공고하며, 재공고 후에도 단독신청 시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하되, 심사결과 평균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미선정함.

○ **(공고방법)** 대전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게시

○ **(응시자격)** 공고일 현재 대전 소재 관련 법령상 자격*을 갖추고, 서구 지정 시설(수밋들 어울림 플랫폼)에서 위탁기간(5년) 동안 직접 운영이 가능한 법인·단체

(*비영리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학교, 사회적협동조합 등)

○ **(접 수 처)** 서구청 여성가족복지과 가족다문화팀

○ **(신청방법)** 방문접수 / 평일 09:00 ~ 18:00(토·일·공휴일 및 우편·인터넷 접수 불가)

○ **(제출서류)** 수탁운영 신청서, 법인 현황, 사업수행능력 증빙서류, 향후 운영계획서(본 보고서 및 요약본 각 10부 등)

2 서류심사

○ **(심사일정)** 2026. 9월 중

○ **(심사방법)** 수탁신청단체의 신청서 등 사전 서류심사

○ **(심 사 자)** 2명 / 공무원(가족다문화팀장 외 1)

○ **(심사내용)** 신청자격, 제안서의 구비요건 및 제출서류 일체 심사

○ **(결과발표)** 결과 공지 및 발표심사일 공고(발표자료 제출 등 안내 포함)

3 민간위탁 의회 동의

○ **(일 정)** 2026. 9. 7. ~ 9. 22. / 제299회 제1차 정례회

○ **(안 건 명)** 대전서구가족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 **(주요내용)** 민간위탁 추진근거, 필요성, 위탁사무내용, 위탁 기간 등

4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별도 계획 수립

○ **(심사일정)** 2026. 10월 중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10명 이내
- 가족복지사업과 관련된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포함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외부위원중에서 호선

○ **(임　　기)** 수탁기관 선정심사 종료 후 자동 해산

○ **(위원자격)**

- 구 소속 공무원(전체위원의 1/4 이내)
-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위탁사무의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은 제외)
- 위탁사무와 관련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 그 밖에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심사에서 제외

○ **(소요예산) 심사위원 참석수당 1,000천원**

▶ 산출내역: 100,000원 × 10명 = 1,000,000원

5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일　　정)** 2026. 10월 중

○ **(장　　소)** 의회 간담회장 2층(예정)

○ **(심사방법)** 운영성과 및 사업계획 발표 ⇒ 질의응답 ⇒ 심의

- 신청 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센터장(예정자) 발표 원칙 (부득이한 경우 대표의 위임을 받은 법인 임직원 가능)
- **심의위원회 미참석(불참) 시 신청 포기(의사 없음) 처리**

○ **(심의내용)** 심사지표에 의거 신청 법인·단체의 공신력, 재정 능력, 사업수행 능력(유사 사업 실적), 향후 센터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수탁기관 결정

○ **(선정방법)**

- 최고.최저점수 제외(다수일 경우 1개만 제외)한 합산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득점자를 최종 수탁기관**으로 선정
-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되, 심사결과 평균 70점 미만인 경우 적격자 없음 → 재공고 등 별도 조치

○ **(의　　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6 선정결과 공고 및 결과 통지

○ 결격사유 등 조회*·회신 후 개별 통지

* ① 법인대표 및 임원이「사회복지사업법」제19조 및 제2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관 여부 조회

②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기관

○ 심의결과 區 **홈페이지에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 및 결정사항 기관 통보

○ 공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서면)시 ‣ 신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통지

7 위수탁 협약 체결

○ **(일　　정)** 2026. 10월 중

○ **(협약식 개최(안))**

- 일시/장소: 2026. 10월 중 / 보라매실
- 참 석 자: 구청장, 수탁기관 대표자, 센터장 예정자 및 관계 공무원 등
- 주요내용: 위·수탁 협약서 서명 및 교환, 기념촬영 등

○ **(협약내용)**

- 위탁 사무의 범위 및 기간
- 종사자 고용 승계 및 고용 유지 방안 이행에 관한 사항
- 예산 집행, 회계 관리 및 운영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도·감독, 안전관리 및 정보보안 의무

7 소요예산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 산		비 고
총 계		1,600,510		
가족센터 운영	가족센터 운영	356,200	1,003,580	국비50% 시비30% 구비20%
	온가족보듬사업	197,490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	47,160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307,730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95,000		
가족센터 운영 보조	가족센터 운영 경비	22,800	22,800	구비 100%
가족센터 종사자 지원	가족센터 종사자 지원	103,400	103,400	시비50% 구비50%
다문화가족특화사업	방문교육	171,150	390,940	국비50% 시비50%
	통번역서비스	76,080		
	언어발달 지원	87,880		
	이중언어 부모코칭	40,130		
	이중언어 직접학습	15,700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20,000	20,000	국비50% 시비25% 구비25%
공동육아나눔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59,790	59,790	국비50% 시비30% 구비20%

8 향후계획

○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제출: ’26. 8. 27.한

○ 수탁기관 공개모집: ’26. 9월 중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26. 10월 중

○ 위·수탁 협약체결: ’26. 10월 중

붙임 1.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수탁운영기관 모집 공고문 1부.

2. 민간위탁 관련 법령 및 조례 1부.

붙임1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수탁운영기관 모집 공고문**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수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의거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수탁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위탁대상: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2. 위탁기간: 2027. 1. 1. ~2031. 12. 31. / 5년

※ 운영실태를 평가 결과 사업수행에 부적합한 경우는 위탁 해지(지정 취소) 가능

3. 위탁사무: 서구 가족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요사업 내용
가족센터 운 영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업무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 · 가족센터 고유사업 /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등 · 지역 여건 및 가족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가족 휴식공간 제공 및 상호교류 활성화 사업 추진 · 그 밖에 서구청장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족센터 시설관리	· 서구 가족센터 건물 전체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 · 위탁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민·형사상 책임 및 민원처리

4.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2026. 9. 1.(화) ~ 2026. 9. 18.(금) / 17일간

○ 접수기간: 2026. 9. 16.(수) ~ 2026. 9. 18.(목) / 3일간

- 단독신청의 경우 7일간 재공고하며, 재공고 후에도 단독신청 시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하되, 심사결과 평균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미선정함.

○ 접 수 처: 서구청 여성가족복지과 가족다문화팀(☎042-288-3212)

○ 신청방법: 방문접수 / 평일 09:00 ~ 18:00(토·일·공휴일 및 우편·인터넷 접수 불가)

5. 수탁자격 / ①항과 ②항 동시 충족

①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사무소(또는 사업장)를 두고 있는 다음의 법인 또는 단체

수탁자격	위탁근거 법령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② 서구청 지정 시설(수밋들 어울림 플랫폼)에 입주하여 위탁기간(5년) 동안 가족센터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시설 면적	전체면적	4층					1층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교류소통공간	언어교실	공동육아나눔터
	730.95㎡	110.05㎡	89.6㎡	131.26㎡	246.36㎡	44.2㎡	109.48㎡

6. 신청 제외 대상

· 법인대표 및 임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및 제2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관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기관
·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단체(예산 횡령, 법인명의 대·차용, 인권침해 등 관련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고발조치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포함)
·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위탁 운영하려는 자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7. 위탁운영 조건

○ 운영재원: 정부 및 지자체 지원 보조금, 사업수익금(이용료 등), 후원금 등

- 지원내용: 관련 지침 및 기준에 의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 수탁자 부담내용: 보조금 및 사업 수익금 외 수탁자가 자체 추진하는 추가 사업비 등

○ 정부 및 지자체 지원 보조금 이외의 추가비용은 수탁자 부담

○ 수탁자는 가족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 금지

○ 수탁자는 가족센터를 영리추구, 사적사용, 정치, 특정종교 활동의 장소로 사용할 수 없음

○ 보조금 및 수익 재산의 활용: 가족센터 운영·관리에만 직접 사용하며 타 용도로 사용금지

○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지도·감독) 등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해 지도·감독함.

○ 수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 위탁기간 중 수행한 가족센터 관련 모든 사업권, 성과물 및 취득 재산은 위탁기간 만료 시 서구청 또는 차기 수탁기관에 승계됨.

○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위탁의 해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해지)할 수 있음.

○ 그 밖에 허위서류 첨부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체 선정 및 위·수탁 계약은 무효로 함.

8. 센터장 자격조건

○ 관련사업 3년 이상 근무경력자(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 관련사업 5년 이상 근무경력자(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

○ 관련사업 7년 이상 근무경력자

○ 기타 위 각 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 관련학과: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 관련사업: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센터장: 건강가정사 또는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필수)

9.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 심사일시: 2026. 10월 중 / 의회 간담회장 2층(예정)

○ 선정방법: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결정

○ 심사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 법인(단체) 대표자 또는 시설장 예정자(공개채용 예외적용에 해당되는 자 등)가 15분 이내 제안 발표 **※ 불참 시 수탁신청 포기 처리**
- 심의위원회 질의에 따른 답변

○ 심사기준

- 심사배점(100점 만점)

심 사 항 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Ⅰ. 공신력	• 법인(단체) 형태・목적의 적합성, 지도감독 지적사항 현황 • 법인(단체) 대표 운영의지 및 센터장 전문성, 사업수행 역량	40점
Ⅱ. 재정력	• 법인(단체) 기본재산 및 부채 현황, 센터 지원계획의 적정성 • 법인(단체) 회계 투명성(재무회계규칙 이행 내역)	20점
Ⅲ. 수행력	• 법인(단체)의 가족관련 사업 운영 실적 • 향후 수탁 운영계획	40점

- 심사위원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를 기준으로 함.
- 최고점과 최하점이 동점으로 2개 이상일 경우 1개씩만 제외
-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아래 심사항목 순위에 따른 점수가 가장 높은 자
  - ▸ 1순위: Ⅲ. 수행력 (40점)
  - ▸ 2순위: Ⅰ. 공신력 (40점)
  - ▸ 3순위: Ⅱ. 재정력 (20점)

○ 심사결과 발표 : 개별통지 및 서구청 홈페이지 게재 / 2026년 10월 중

10.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이나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단, 공고기관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요구 시에는 제출 가능)

○ 신청접수 현황, 위원회의 심의내용 및 신청자별 배점결과는 비공개함.

○ 수탁기관 선정심사는 제출된 서류와 발표를 바탕으로 진행되므로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자는 위탁 운영 조건 등을 숙지하여 신청서류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수탁기관 선정 후 <위·수탁 협약서>에서 정하며, 지정된 기일에 우리 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서구의 결정에 따름)

○ 모집 공고는 사정에 의해 변경·취소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함

○ 접수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신청을 무효로 처리하며, 증빙(증명)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센터장(시설장)은 관련 기준에 따라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근무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여성가족복지과(☎042-288-3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에 우리 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12. 제출서류 목록

<table>
<tr><th>순서</th><th colspan="2">제 출 서 류</th><th>비 고</th></tr>
<tr><td>1</td><td colspan="2">▶ 수탁신청서 및 서약서</td><td>서식1, 1-1 참조</td></tr>
<tr><td rowspan="4">2</td><td colspan="2">▶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사의뢰서</td><td rowspan="4">서식2 참조</td></tr>
<tr><td>◦법인(단체) 공신력</td><td>- 법인 현황
- 법인 사업수행 실적 등
- 법인 대표 및 센터장(예정자)경력사항 및 자격증 등 취득 현황(증빙자료 포함)</td></tr>
<tr><td>◦법인(단체) 재정력</td><td>- 법인 재산 및 부채현황
- 법인의 센터에 대한 향후 지원계획
- 예·결 산 등 재무회계규칙 이행내역</td></tr>
<tr><td>◦법인(단체) 수행력</td><td>- 가족관련 사업 운영실적 및 수상내역
- 향후 가족센터 통합서비스 운영계획
-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 계획</td></tr>
<tr><td>3</td><td colspan="2">▶ 대리인 접수 위임장,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 확인서, 사용인감신고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td><td>서식3,4 참조
서식5,6,7 참조
서식8 참조</td></tr>
<tr><td>4</td><td colspan="2">▶ 심사의뢰 관련 요약서</td><td>서식9 참조</td></tr>
<tr><td rowspan="2">5</td><td colspan="2">▶ 법인(단체) 관련 증빙서류</td><td rowspan="2">원본제출
(원본 책자에만 첨부)</td></tr>
<tr><td colspan="2">- 법인 등기부등본 1부.(해당시) - 법인(단체 대표) 인감증명서 1부.
- 정관(법인(단체) 관련 규정 포함),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
- 최근 3년간 예·결산서 각 1부.</td></tr>
<tr><td>6</td><td colspan="2">▶ 기타 수탁운영 평가에 필요한 사항</td><td></td></tr>
<tr><td colspan="4">※ 심사자료 : 심사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요약보고서 2권으로 작성
▶ 본 보고서 :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실적 증빙
▶ 요약 보고서 :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본보고서 요약</td></tr>
</table>

13. 제출서류 작성 및 발표

○ 제출서류 제본 및 제출 수량

- 제출서류는 본보고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와 요약보고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로 각각 구분하여 제본 후 제출
- A4 용지 규격, 양면인쇄, 좌철 편철(책자 형태)로 제출
- 심사항목별 **색인지(견출지/라벨)를 반드시 부착**하고, 목차 및 페이지(쪽 번호)를 명확히 표시
- 모든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공고일 이후여야 함 (단, 재정 능력 등 실적 관련 자료의 발급 기준일자는 공고일 전일임)
- 모든 정량적 실적 자료는 2026. 6. 30. 기준(2023. 1. 1. ~ 2026. 6. 30.)으로 작성 및 증빙

○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 향후 가족센터 운영계획서(요약)는 A4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예산서 작성 시 1년 기준으로 작성
- 인건비는 「2026년 가족사업안내」(여성가족부) 및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준수

○ 발표 및 발표자료 안내

- 수탁신청기관은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15분 이내 구술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관계자 3인 이내 참석)
- 발표자료(PPT) 제출은 선택사항이며, 별도 PPT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출한 요약보고서로 발표를 진행함
- PPT 자료 활용 시 Power Point 파일로 작성(동영상 불가)하여 신청서류 접수 시 USB 1개 및 출력물 10부를 동시 제출(사후 수정/보완 불가)

붙임2 관련 법령 및 조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②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 16., 2025. 10. 1.>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④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센터의 운영은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2025. 10. 1.>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제35조의2(가족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4. 22.]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23.] [성평등가족부령 제3호, 2025. 10. 23., 일부개정]

제6조의2(가정센터 및 가족센터의 평가) ①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가정센터 및 가족센터의 사업수행 실적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 수립·시행의 적정성
2. 가정센터 및 가족센터의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3.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4. 사업추진성과
5. 그 밖에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평가를 건강가정 및 가족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성 및 인력·장비 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본조신설 2025. 10. 23.]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2025. 12. 30.] [법률 제21272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5. 19.>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위탁·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12. 2. 1.]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절차를 고시하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③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9. 10. 8.> [본조신설 2012. 7. 31.]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1.] [대전광역시서구조례 제2059호, 2023. 12. 28., 전부개정]

제4조(위탁 대상사무)

①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그 장을 포함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제5조(위탁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공공·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위탁(재위탁 및 재위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로부터 사업비 전액을 보조 받는 사무로서 그로부터 위탁 승인을 받은 경우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로부터 사업비 보조를 받는 사무로서 수탁기관이 미리 정하여진 경우
3.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는 경우
4.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
5.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
6. 재난·재해 대응 등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위탁사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탁기간이 3개월 이상 변경되는 경우
2. 소요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위탁시설 또는 그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사무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제7조(위탁 동의안)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11조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재계약인 경우에 한함)
10. 그 밖에 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위탁사무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검토해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보유 수준
2. 수탁기관의 재정 부담 능력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사무처리 실적
5.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고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재계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구 소속 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위탁사무의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은 제외)
3. 위탁사무와 관련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4. 그 밖에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수탁대상기관에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및 필요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탁사무와 관련된 시설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6.02.20]
(일부개정) 2026.02.20 조례 제2269호

제6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참고사항-나

2026. 7.

- 가족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

대전서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

주 민 복 지 국

여성가족복지과/가족다문화팀

- 가족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

대전서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

○ **대전서구가족센터 운영 위탁기간 만료일(2026.12.31.) 도래**에 따른 민간 위탁 적정성에 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위탁운영 등)

○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위탁 적정성 검토)

2 민간위탁 개요

○ **(위탁기간)** 2027. 1. 1. ~ 2031. 12. 31. / *5년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 **(위탁사무)**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전반

○ **(시설현황)**

<table>
<tr><th>구분</th><th>주요내용</th></tr>
<tr><td>위탁기간</td><td>2022. 1. 1. ~ 2026. 12. 31.(5년) ※ 최초위탁: '13.4.10.~'15.12.31.</td></tr>
<tr><td>소 재 지</td><td>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로7번길 28-12, 4층(수밋들어울림풀렛폼)</td></tr>
<tr><td>시설규모</td><td>
<table>
<tr><th rowspan="2">전체면적</th><th colspan="5">4층</th><th>1층</th></tr>
<tr><th>사무실</th><th>상담실</th><th>교육실</th><th>교류소통 공간</th><th>언어교실</th><th>공동육아 나눔터</th></tr>
<tr><td>730.95㎡</td><td>110.05㎡</td><td>89.6㎡</td><td>131.26㎡</td><td>246.36㎡</td><td>44.2㎡</td><td>109.48㎡</td></tr>
</table>
</td></tr>
<tr><td>운영주체</td><td>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이경찬) / 센터장 김정현</td></tr>
<tr><td>운영인력</td><td>36명 / 비상근직 8명(센 터 장 1, 방문교육 7)
상 근 직 28명(가족친화 7, 가족지원 7, 특성화 7, 아이돌봄 7)</td></tr>
<tr><td>주요사업</td><td>가족통합서비스(관계·돌봄·생활), 다문화가족 특화사업(방문교육·통번역·언어지원), 공동체·돌봄 사업(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td></tr>
</table>

3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검토기준)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한 7개 항목

○ (세부검토 내용)

검토기준	검토내용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검토의견: 민간위탁이 타당함** ○ **(직영 시 한계)** 구 직접 수행(직영) 시 공무원 순환보직 제도로 인해 복지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총액인건비제 및 정원 규제로 인해 탄력적인 인력 운용에도 한계가 있음. ○ **(위탁의 필요성)**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상담사, 통번역사 등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므로,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이 수행하고 구는 관리·감독에 집중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함.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검토의견: 타월(지역 내 복지 자원 연계를 통한 안정적 서비스 제공)** ○ **(공공성 및 안정성)** 가족센터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보편적 가족서비스와 다문화가족 지원을 수행하는 공공복지시설로서 공공성과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확보되어야 함. ○ **(법령에 따른 보완 가능성)** 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여성가족부 가족사업안내 등에 따라 설치·운영되며, 사업 운영기준, 종사자 배치기준, 사업평가 및 성과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서비스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 **(구청의 관리·감독)** 구청은 위·수탁 협약 및 보조금 관리, 지도·점검, 성과평가 등을 통해 사업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운영상 문제 발생 시 시정명령 및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3. 경제적 효율성	□ **검토의견: 적정 (예산 절감 및 재원 조달 효과 우수)** ○ **(비용 절감)** 민간 전문기관의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사업관리 체계를 활용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외부 자원 활용)**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민간 후원 및 자원봉사 연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가족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함.
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 **검토의견: 탁월 (가족서비스 전문성 활용 필요)** ○ **(맞춤형 프로그램)** 가족상담, 사례관리, 부모교육, 가족교육, 다문화가족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은 축적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임. ○ **(전문적 인력 관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상담전문인력, 통번역사 등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할 수 있어 서비스 품질 향상이 가능함.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 **검토의견: 탁월 (정량·정성 평가 지표 수립 가능)** ○ **(지표 설정 용이)** 이용자 수, 프로그램 운영 실적, 만족도 조사, 사업성과, 성평등가족부 사업평가 결과 등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활용한 평가가 가능함. ○ **(성과 환류)**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재계약 여부 및 서비스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책임 있는 기관 운영을 유도할 수 있음.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검토의견: 적정 (관리·감독 체계 구축으로 투명성 확보 가능)** ○ **(리스크 요인)**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종사자 인사관리, 사업 운영의 공정성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통제 장치)** 구의 정기적인 지도·점검, 보조금 정산, 성과평가 및 회계관리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

7. 공공·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 **검토의견: 적정 (전문 운영기관 확보 가능)** ○ **(사업의연속성)** 가족센터 운영 경험과 가족복지 전문성을 갖춘 대학 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 전문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함. ○ **(기존 운영성과)** 금회는 기존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여 재계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기존 운영성과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가족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4 검토결과

❍ 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한 시설임.

❍ 가족센터는 가족상담, 가족교육, 사례관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다문화가족 지원 등 전문성과 연속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민간 전문기관의 축적된 운영 경험과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 향상과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효과적임.

❍ 민간위탁 운영 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전문인력 운영 및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가족복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행정조직의 확대를 방지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또한, 구의 지도·감독, 보조금 관리, 성과평가 및 회계관리 등을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전문적인 민간위탁 운영이 효과적임.

5 부서의견

○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위탁 적정성 검토)에 따른 7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간 전문기관의 축적된 노하우와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및 효율적인 사무 처리에 효과적이므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사료됨.

6 행정사항

○ 추진 계획 수립: ’26. 7월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26. 8월
○ 위탁 동의안 제출: ’26. 8. 27.한
○ 위・수탁 협약체결: ’26. 10월